

힐스테이트 통영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힐스테이트 통영」의 주택청약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로 변경되었으니 청약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물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청약 미접수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으며, 선정된 특별공급대상자가 청약 접수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약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기관에서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당 사업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 통영 홈페이지(www.hillstate-hec.co.kr/tongyeong)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327번지 일원
- 공 급 규 모 : 지하4층, 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6개동 총 7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시기 : 2025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 급 대 상 : 아 래

주택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민영 주택	59.9653A	59A	59.9653	22.1403	82.1056	32.8967	115.0023	75
	59.9420B	59B	59.9420	22.1065	82.0485	32.8839	114.9324	40
	76.9017	76	76.9017	27.1006	104.0023	42.1879	146.1902	143
	84.7798A	84A	84.7798	29.2564	114.0362	46.5098	160.5460	267
	84.8759B	84B	84.8759	29.4764	114.3523	46.5625	160.9148	104
	109.7750	109	109.7750	36.3100	146.0850	60.2221	206.3071	104
	145.9761	145	145.9761	49.0460	195.0221	80.0818	275.1039	51
공급세대 합계								784

- 기관별 배정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85m² 이하 민영주택 10%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76		84A		84B		계	
	확정	예비 (100%)	확정	예비 (100%)	확정	예비 (100%)	확정	예비 (100%)	확정	예비 (100%)	확정	예비 (100%)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1	1	-	-	2	2	5	5	1	1	9	9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1	1	-	-	1	1	1	1	1	1	4	4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1	1	1	1	1	1	1	1	4	4
계	2	2	1	1	4	4	7	7	3	3	17	17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므로,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에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정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 02. 18(금) 예정	당사 홈페이지 (www.hillstate-hec.co.kr/tongyeong)
건본주택 개관일	2022. 02. 18(금) 예정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0-3번지 ※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2. 02. 28(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2. 03. 10(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20.03.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 건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건본주택 별도 문의)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여부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자격요건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 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 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①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 바람.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40%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게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청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청자를 선정하므로 당청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청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청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청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청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청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청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청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청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청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청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내용

III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0-3번지
- 사업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327번지 일원
- 분양홈페이지 : www.hillstate-hec.co.kr/tongyeong
- 분양문의 : 055)645-0333

- ※ 첨부자료 1. 조감도
2. 사업지 및 견본주택 위치도

1. 조감도



2. 사업지 및 견본주택 위치도

